



축산법령

#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시행 2018.3.2.]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12호, 2018.3.2., 일부개정]

## 【제정·개정이유】

- 농림축산식품부 직제 개정사항(17.8.8)을 반영하여 중앙예찰협의회 대상 위원에 대한 현행화 및 유관기관 포함 반영 필요
- 축산차량 GPS 미장착 및 가축전염병 조기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3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신설 및 상향 조정 필요(AI·구제역방역개선대책, AI방역종합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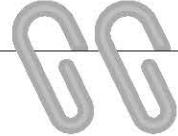
## ◎ 주요내용

- 가. 직제 개정에 따른 가축전염병 중앙예찰협의회 위원 조정
  -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장, 구제역방역과장,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으로 변경
- 나. 야생조류 예찰 협력 강화를 위해 중앙예찰협의회 위원 확대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장”을 추가함
- 다. 예찰협의회 내실화를 위해 개최주기 조정
  - 개최주기를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조정(필요시 추가 개최가능)
- 라. 제3자 신고포상금 지급액 상향 및 신설(안 제18조제2항 별표1)
  - 전염병 신고포상금을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100만원 → 500만원)
  - 축산차량 미등록 및 GPS 미장착차량 신고포상금 신설(20만원)

## 【제정·개정문】 일부 개정안

### 제4조(중앙협의회 구성)

- ① 중앙협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중앙협의회의 위원장은 검역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장, 구제역방역과장 및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
  2.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장 및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질병방역팀장
  3.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장
  4.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각 과장, 동식물위생연구부장 및 각 과장
  5. 시·도의 가축방역 담당과장 및 시·도가축방역기관장(지소장을 제외한다)



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컨설팅부장, 한국마사회 방역관리담당팀장
  7. 대한수의사회 상근부회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한국동물약품협회·한국사료협회·한국낙농육우협회·전국한우협회·대한한돈협회·대한양계협회·한국육계협회·한국토종닭협회·한국오리협회의 전무
  8. 위원장이 예찰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자
- ③ 중앙협의회의 간사는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방역감시과장이 된다.

#### **제5조(지역협의회의 구성)**

-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도 가축방역부서의 방역정책담당사무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가축질병방역센터장
  2. 시·도 가축방역부서의 방역담당 사무관
  3. 시·도가축방역기관의 각 과장 및 각 지소장
  4. 시·군의 가축방역 담당과장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역본부 축산관련 팀장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도본부장
  6. 대한수의사회 시·도지회장 및 생산자단체 시·도지부장
  7. 위원장이 지역예찰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자
- ③ 지역협의회의 간사는 시·도가축방역기관의 가축방역 담당과장이 된다.

#### **제7조(협의회 개최 등)**

-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협의회는 매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가축방역 여건 또는 업무형편을 고려하여 협의회를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 ③ 검역본부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지역협의회에 참석토록 하여 방역지도 및 교육·홍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협의한 결과와 관할지역내 가축전염병 발생동향 등의 자료를 중앙협의회의 위원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협의회 위원장은 가축방역상 필요한 경우 지역협의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이 요령에서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18조(신고포상금)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 발생 및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요령은 별표 1에 의한다.
- ③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사실의 신고 또는 보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11조제4항에 의해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9조(살처분보상금)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의뢰된 폐사가축 시료에 대한 병성감정 실시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가 법 제20조에 따라 살처분을 명하는 경우 살처분보상금은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별표 2]중 제2호 라목 3)에 따라 살처분 당시의 살처분한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60을 감액한다.

### 부칙 부 칙 <제2018-12호, 2018.3.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제1호나목(3)의 개정규정은 201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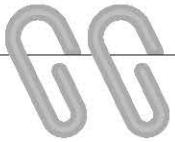
###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제18조제2항 관련)

#### 1.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가. 구제역·돼지열병·소해면상뇌증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신고자. 다만, 해당 가축의 소유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행위자를 신고한 자

-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돼지열병·뉴캣슬병 예방접종명령 위반자
- (2) 법 제17조에 따라 가축사육시설 등의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3)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 법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



### 거나. 훼손·제거한 자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 위반자 및 이에 협조한 기죽운송업자·도축장영업자 등

## 2. 신고유형별 포상금 지급금액 및 기준

지급 대상	신고 포상금	확인방법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임상의심축을 신고한 자	500만원	검역본부장이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 양성
	50만원	임상소견상 의심되어 검역본부장이 정밀검사 실시 정밀검사 결과 : 음성)
돼지열병 발생을 신고한 자	50만원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 양성
소해면상뇨증 임상의심축을 신고한 자	100만원	검역본부장이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 양성
	30만원	임상소견상 의심되어 검역본부장이 정밀검사 실시 정밀검사 결과 : 음성)
돼지열병 또는 뉴캣슬병 예방접종명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30만원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브루셀라병 검사 또는 검시증명서 휴대명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30만원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기죽사육시설 도축장 등의 소독관련규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20만원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축산자방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한 자, 차량무선안식장치(GPS)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한 자, 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자를 신고한 자	20만원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부과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 명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20만원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부과

## 3.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가. 기죽전염병 발생 및 기죽전염병예방법령 위반자의 해당 기죽 또는 시설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한다.

- (1) 시장·군수는 기죽전염병예방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시 위반자에 대한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법적·행정적 조치를 우선 실시하고 조치사항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2)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시 신고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번호, 신고일자, 신고유형, 조치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을 검토·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배정한 신고포상금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1) 시·도지사는 동일한 대상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최초 신고한 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2) 시·도지사는 1인당 신고포상금이 월간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임상 의심축을 신고하여 검역본부장이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는 신고포상금이 월간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 시·도지사는 신고포상금 지급 시 지급 건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급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